회사보관용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본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DB생명 이율보증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됩니다.

DB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구 분	내 용			
상품 유형	원리금 보장형			
가입 대상	IRP 개인형* 퇴직연금 보험(무배당) 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D8생명 개인형 퇴직연금보험(개인형, 무배당) 자산관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상품 개요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기 위한 상품의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 확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원금과 이자가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상품 구조	이율보증기간 1/2/3/5년			
52 ,=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 · 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 이율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을 설정된 단위보험을 확정 적용됩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DB생명 홈페이지(www.idbl · 경로: www.idblife.com >공시실>상품공시실>퇴직연금 >자시제공상품>이율보증형보험 ※ 적용이율은 매월 1일의 지표금리 [*] 를 기준이율로 하며, 7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현	f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공시〉퇴직연금사업자공시〉원리금보장형상품현황 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단도로 합니다.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H	(👤)	
U		

구 분	내 용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DC/IPR형 중도해지 이율					
	이율보증기간 1년형	보유기간 1년미만	중도해지이율 적용이율×90%	이율보증기간	보유기간 1년미만	중도해지이율 적용이율×50%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1년영} 2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8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60%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90% 적용이율×70%	F14=1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적용이율×70% 적용이율×80%
		1년이상 ~2년미만	적용이율×80%	5년형	3548 4545	78 92 100 70
	3년형	2년이상 ~3년미만	적용이율×90%		4년이상 ~ 5년미만	적용이율×90%
		7 7 - 11 - 12 - 12 - 12 - 12 - 12 - 12 -	T = 1171010	0.710-1710	l lel	<u> </u>
특별 중도해지	이래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의 퇴직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하는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앙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고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신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신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신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퇴직연금 계약해지 사유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 사망 4)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 ①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 ①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					





회사보관용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2. 소비자권리 보호 안내 관련

구 분	내 용
예금자보호여부	해당됨.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법계약해지	가입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비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됨) 일반금융소비자인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퇴직연금 콜센터(1588-554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idb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회사보관용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 주요내용 안내확인 (설명 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란에 (v)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확인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mark>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mark>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0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

설	명	내	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재설정 예금자보호여부,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회사는 고객(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객은 설명받는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명 (서명 · 날인)

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날인) 영업담당자 [소속] [성명]





고객보관용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본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DB생명 이율보증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됩니다.

DB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구 분	내 용			
상품 유형	원리금 보장형			
가입 대상	IRP 개인형* 퇴직연금 보험(무배당) 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D8생명 개인형 퇴직연금보험(개인형, 무배당) 자산관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상품 개요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기 위한 상품의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 확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원금과 이자가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상품 구조	이율보증기간 1/2/3/5년			
52 ,=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 · 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 이율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을 설정된 단위보험을 확정 적용됩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DB생명 홈페이지(www.idbl · 경로: www.idblife.com >공시실>상품공시실>퇴직연금 >자시제공상품>이율보증형보험 ※ 적용이율은 매월 1일의 지표금리 [*] 를 기준이율로 하며, 7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현	f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공시〉퇴직연금사업자공시〉원리금보장형상품현황 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단도로 합니다.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blacksquare	
1	

구 분	내 용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DC/IPR형 중도해지 이율 이율보증기간 보유기간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기간 보유기간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1년형 2년형 3년형	1년미만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적용이율×90% 적용이율×80% 적용이율×90% 적용이율×70% 적용이율×80% 적용이율×90%	5년형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적용이율×50% 적용이율×60% 적용이율×70% 적용이율×80% 적용이율×90%
특별 중도해지	1) 가입자의 2) 퇴직연금 ① 무주택 ② 무주택 ③ 가입자 (가입자 ④ 가입자 파산선 ⑤ 가입자 개인호 ⑥ 그 밖아 3) 퇴직연금 ① 사용자 ② 사용자 ② 사용자 ③ 관련법 ④ 가입자 4) 퇴직연금	라의 중도인출하는 경우 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 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5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다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 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고를 받은 경우 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I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금 계약해지 사유 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 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 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될	P입하는 경우 E는 보증금을 부드이상 요양으로 되는 기천분의 125를 신청하는 날부터로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 영업양도로 유를가피한 경우	담하는 경우 의료비를 부담 를 초과하여 으 더 역산하여 5년 더 역산하여 5년 인하여 사용지	하는 경우 료비를 부담하는 경: 면 이내에 「채무자 회 면 이내에 「채무자 회 가 근로자대표의 동:	우만 가능)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보관용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2. 소비자권리 보호 안내 관련

구 분	내 용
예금자보호여부	해당됨.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법계약해지	가입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됨) 일반금융소비자인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비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퇴직연금 콜센터(1588-554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idb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고객보관용

DB생명 DC/IRP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 주요내용 안내확인 (설명 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란에 (v)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확인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mark>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mark>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단위보험 <mark>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mark>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_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

설	명	내	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재설정 예금자보호여부,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회사는 고객(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객은 설명받는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명 (서명 · 날인)

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영업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 · 날인)



